



함양군



전주대학교

업 무 협 약 서

함양군과 전주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한다.

제1조(목 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, 포괄적 업무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공동이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 협력내용에 대해 적극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
2. 학생 대상 지역의 문화·역사 교류 상호 협력
3. 상호 시설 이용 홍보 및 할인에 대한 협력
 - 함양군 대봉산 스카이랜드 이용 시 함양 주민에 준하는 할인
4. 군민 대상의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지원
5. 대학 평생학습 차원의 관·학 협력 확대
6. 농촌 지원활동 참여 협력
7. 정부지원 국고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
8. 그 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

제3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1.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(추가)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2.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업무협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
제5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제6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0월 31일

 **함양군**
군수 진병영

전주대학교 
총장 박진배



